



강남구 계약관련 검토 규정

계약관련 방침서 결재 (강남구 사무전결기준 별표2)

과별	단위 업무	세부사항	기안 및 전결권자				결재	
			담당자		실장 담당관 과장	국장	부 구 청 장	구 청 장
			6급 이하 업무 담당자	6급 총괄 책임자				
공통사 항	4 예산 회계	27. 공사설계변경						
		가. 기본설계 변경		기안			○	
		나. 기본설계 이외의 변경	기안			○		
		2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방침결정						
		가. 계약금액 10%이상	기안				○	
		나. 계약금액 10%미만	기안			○		
		2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방침결정	기안					○
		30. 시공감독 및 준공검사원의 조정	기안				○	
		35. 공사 (추정가격 기준)						
		가. 3억원 이상	기안				○	
		나. 3억원 미만	기안			○		
		36. 물품 제조 및 용역 (추정가격 기준)						
		가. 1억원 이상	기안				○	
		나. 1억원 미만	기안			○		
		37. 물품매입 및 기타 (추정가격 기준)						
		가. 5,000만원 초과	기안					○
		나. 5,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기안				○	
		다. 2,000만원 이하	기안			○		
	38. 토지매매대금, 배상금, 보조금 지출품의							
	가. 1억원 이상	기안				○		
	나. 1억원 미만	기안			○			
	39. 조달청3자단가구매	기안			○			
	지계법시행령제25조제1항에의거 수의계약 방침 / 전자수의계약 제외 (추정가격기준)							
	공사·용역·물품 300만원 미만	기안					○	
	5 기금 운용	1.기금집행 (추정가격기준)						
		가. 물품제조, 용역						
		1) 2,000만원 이상	기안				○	
		2) 2,000만원 미만	기안			○		
나. 공사								
1) 3,000만원 이상		기안				○		
2) 3,000만원미만		기안			○			
다. 물품매입 및 기타								
1) 1,000만원 이상		기안				○		
2) 1,000만원 미만		기안			○			

■ 계약관련 방침서 협조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1항)

1. 재무과 협조(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는 생략가능)

-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 4) 민간위탁경비
- 5)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

구분	금액	합의자
공사 또는 토지매입	건당 3억원 이상	행정국장
	건당 3억원 미만	재무과장
	건당 5백만원 미만	계약(지출)팀장
용역 또는 물품제조 민간위탁경비	건당 1억원 이상	행정국장
	건당 1억원 미만	재무과장
	건당 5백만원 미만	계약(지출)팀장
물품구매 및 기타	건당 5천만원 이상	행정국장
	건당 5천만원 미만	재무과장
	건당 5백만원 미만	계약(지출)팀장

※ 합의권자가 과장,국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팀장의 합의를
-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팀장의 합의를 받되, 업무의 성격상 2담당이상 관련이 있는 것은 관련 팀장 모두의 합의를 받은 다음 과장, 국장의 합의를 받는다.

2. 기획예산과 협조

-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 5) 구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 8) 구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구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다른 예에 속하는 사항

■ 회계기안문 종류 및 결재선

1. 회계기안문 종류

- 1) 물품구매품의 및 요구서(연간단가)
- 2) 회계기안문(일반지출)
- 3) 회계기안문(계약의뢰) - 물품, 용역, 공사 계약
- 4) 조달구매품의 및 요구서(3자단가 계약)

2. 결재선 지정 방법

1) 국장전결

국장전결 : 발주부서 국장

- ↑ 심사5 : 행정국장
- ↑ 심사4 : 재무과장
- ↑ 심사3 : 계약업무주사 (재무과)
- ↑ 심사2 : 회계심사자 (재무과)
- ↑ 심사1 : 지출품의자 (지출품의부서)
- ↑ 검토 : 과장
- ↑ 검토 : 업무담당주사
- ↑ 기안 : 담당자

2) 과장전결

과장전결 : 발주부서 과장

- ↑ 심사4 : 재무과장
- ↑ 심사3 : 계약업무주사 (재무과)
- ↑ 심사2 : 회계심사자 (재무과)
- ↑ 심사1 : 지출품의자 (지출품의부서)
- ↑ 검토 : 업무담당주사
- ↑ 기안 : 담당자

* 회계기안문 심사결재는 경리관(행정국장)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제5조)

* 분임경리관(재무과장) 위임

- 추정가격 3억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 추정가격 1억 미만의 용역 또는 물품제조
-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기타
- 단가계약품목납품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 인건비 및 의무적 경비, 일상경비의 교부 등

■ 계약발주 시 고려사항

1. 전자공개 수의계약 확대 (재무과-22700, 2012.09.24)

- 1) 내용 : 추정가격 300만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하여 전자공개 수의계약 확대
- 2) 대상부서 : 전 부서(동 주민센터 제외)

※ 3백만원 이상 1인견적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방침 시 구청장 결재(업체명 기재)

2. 계약원가심사 의뢰(재무과-22968, 2014.9.16 → 계약심사팀)

공사·용역·물품 등의 사업 발주 전 및 설계변경 시에 기초금액에 대한 원가산정

1) 계약심사 대상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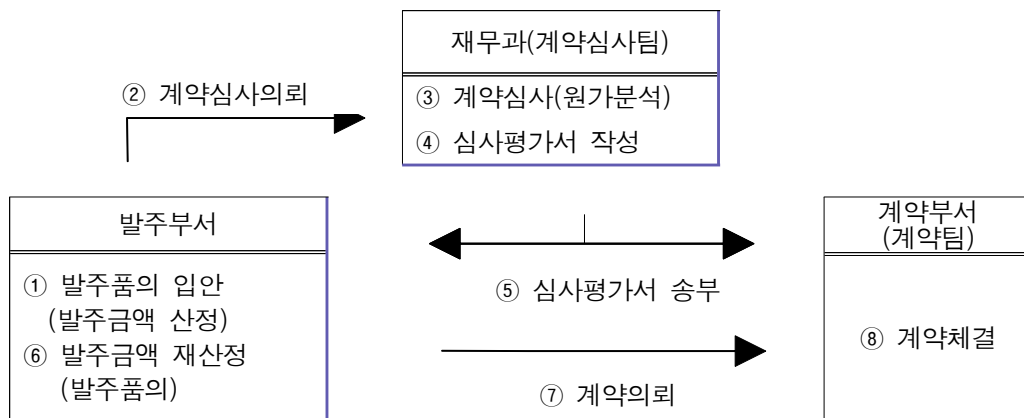
구본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동주민센터,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남문화재단, 강남복지재단

2) 계약심사대상

구분	자체심사			서울시 심사의뢰(계약심사과)
	자체사업 (구비 사업)		시비 재배정 사업 및 국 . 시비 보조사업	시비 재배정 사업, 국 . 시비 보조사업(일부포함 시에도 적용)
원가 심사	공사	1천만원 이상	1천만원이상 5억원미만	5억원 이상 (중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용역	1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 1천만원~2억원 미만 일반 . 학술 : 1천만원~1억원 미만	기술용역 : 2억원 이상 일반 . 학술용역 : 1억원 이상
	물품	5백만원 이상	5백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2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	1천만원 이상 증가시		1천만원 이상 증가시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재료비 + 부가가치세

3) 계약심사처리절차



3. 일상감사요청 (강남구 일상감사규정 → 감사담당관)

1) 적용범위

구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와 각종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 (이하 "감사대상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 요청

2) 대상 및 시기

대상업무	범위 (부가가치세 포함)	요청시기
○ 시설공사 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공사 : 5억원 이상(관급자재비 제외) ▶ 전문공사 : 3억원 이상(관급자재비 제외) * 조달청 계약의뢰 모든공사 제외 	발주일 20일전까지
○ 설계변경 - 시설공사 - 용역 - 물품구매·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감사 적용대상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조달청 계약(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제외 	최종결재전
○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용역(설계경기 포함), 타당성 조사용역, 학술용역, 연구용역 및 일반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비 1건당 5천만원 이상 ▶ 감리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비 1건당 1억원 이상 * 조달청 계약의뢰 모든 용역 제외 	발주일 15일전까지
○ 물품구매·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구매·제조 1건당 5천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당 단가 1백만원이상 * 조달청 구매의뢰 모든 물품 제외 	발주일 10일전까지

4. 학술용역 발주 시 주요시책심의회 상정

(강남구 주요시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 제5호) → 기획예산과

○ 3,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사업(법령 등에 따라 실시하는 학술용역 포함) 시행에 관한 사항

5. 특정제품선정위원회 운영 (재무과-15595, 2013.6.7 → 계약심사팀)

구분	운영대상
물품의 제조·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제품의 품명당 가격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인 물품·제조업의 경우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명당 가격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1) 특정제품을 포함한 각종 사업을 발주할 경우 발주부서에서는 반드시 특정제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계약심사의뢰

- **특정제품**이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물품제조·구매 및 공사 발주시 물품 등에 대한 제조업체명, 제품모델명, 특정규격(사양) 및 공법(기술)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조건 제시 포함)함으로써 다른 제품(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의 제품과 공법을 의미한다. 다만, 서울시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 소관사항인 신기술은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 **품명**이란 제품의 특정이름이며, 품목은 품명의 목록을 말함
- **품명당가격**이란 1개당 품명가격뿐만 아니라 동일 품명의 수개의 합을 의미하고, 부가가치세제외 금액을 말함

2)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 특정제품의 품명당 가격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부가세 제외)
 - 단일 특정품명을 한개 또는 여러개 구매시 구매금액의 합계가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위원회 개최대상임
 - 6가지 품목이 포함된 사업비 1억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중 2가지 품목 중에 특정물품이 포함된 경우, 1개 품명은 8백만원 또 다른 1개 품명은 4백만원일 경우 위원회 개최대상이며 두가지 품명 모두 심의 대상에 포함
 - 6가지 품목이 포함된 사업비 1억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중 2가지 품목 중에 특정 물품이 포함된 경우, 1개 품명은 4백만원 또다른 1개 품명은 3백만원일 경우 위원회 개최대상이 아님
- 특정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추정가격이 5백만원 이상인 물품제조의 경우
 - 특정한 설비·기술이 1개 또는 수 개의 합계가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위원회 개최대상임

3) 토목·건축 등 공사의 경우

- 공사금액 중 특정제품의 품명당 원가가 5백만원 이상인 경우
 - 단일 특정품명을 한개 또는 여러개 구매 시 구매금액의 합계가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위원회 개최대상임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10조)

- 1천만원 이상의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 ☞ 현재 207개,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215호)
- 직접생산업체(직접생산증명서 소지)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1천만원 이상의 1인수의 계약에도 적용)

중소기업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조회

7.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2조의2)

- 2.3억원 미만의 물품·용역을 구매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일반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미만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1억원이상~2.3억원미만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1천만원 이상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8.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 공사발주 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자재는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관급구매)
- 종합공사 20억원이상, 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 3억원 이상의 공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경쟁품목으로써 소요되는 자재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분리구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 ☞ 현재 아스콘, 레미콘 등 123개 품목,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1호)

중소기업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조회

9. 분리발주제도(지방계약법시행령 제77조)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
- 단,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된 공사는 분리발주 하여야 함
 -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 소프트웨어 제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

10.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

(강남구 재무과-24921, 2014.10.13), (서울시 재무과-24921, 2014.09.23)

- 계약문서(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계약 시 첨부되는 모든 서류)에서 → 갑을(甲乙)용어를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로 대체사용
- 사업발주부서에서는 계약의뢰 시 자가 진단한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 를 계약부서에 송부 [별첨 1]

「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 체크리스트

사 업 명				
부 서 명		작성자		연락처
제출일자	2014.			

연번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사항	해당 유무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첨부서류에 강남구를 '발주처'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계약내용 변경사유 발생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6절	Y/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강남구가 일방적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6절	Y/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과업수행중 추가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6절	Y/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과업수행중 과업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비용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은 없는가 ?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6절	Y/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과업내용 해석상 이견 발생시 강남구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9절 3. 분쟁의 해결	Y/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공사변경, 추가공사 시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7절	Y/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공사변경, 추가공사 시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7절	Y/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과업내용에 '그 밖에 강남구가 요구하는 사항' 등이라고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Y/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시행일 : 2014.11.01.부터

■ 계약변경 및 준공 시 고려사항

1. 건설공사 예비준공검사

(감사담당관-1910,2014.2.12), (감사담당관-7892, 2013.5.28)

○ 시행일 : 2014. 2. 14.

구분	내 용
검사대상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 단,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 주요 구조물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의무실시 ※ 5억원 미만공사, 단가계약공사, 기타 예비준공검사가 필요한 공사는 부서장 책임 하에 자율적 시행
강 화	-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사 외부전문가와 합동 점검 실시(주공정 분야 전문가 1명이상 포함)
최 종 하자검사	- 준공금 10억원 이상 공사 : 외부전문가 활용점검 - 준공금 10억원 미만 공사 : 팀장포함 2명이상 점검
검사시기	- 1 ~ 6개월 미만 : 준공 15일 전 - 6 ~ 12개월 미만 : 준공 30일 전 - 12개월 이상 : 준공 2개월 전
검사체계	- 예비준공검사조서 서식을 전자결재 등록하여 사용 - 예비검사 실시 후 검사조서를 3일내 재무과에 제출 - 발주부서는 매분기별 추진 실적을 감사담당관에 제출

2. 건설공사설계변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도로관리과-6921, 2013. 4. 2)

○ 3천만원 ~ 5억원미만 : 15%이상 증 또는 감

○ 5억원이상 : 10%이상 증 또는 감

※ 설계변경심의 제외 대상 : 신규공종 없는 단순 수량 증·감에 의한 설계변경

3.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검사자 지정 기준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제123조 제6항 관련)

구 분	금 액	검 사 자
물 품	1,000만원 미만	주관과 주관팀 7급이하 2명
	1,000만원 이상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주관팀 7급이하 1명
공사·용역	1억원 미만	주관과 주관팀 7급이하 2명
	1억원 이상	주관과 주관팀장 / 주관팀 7급이하 1명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 문의 및 해당부서 : 서울시(계약심사과) ☎ 02-2133-3324~32

- ◆ 의뢰시기 :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 ◆ 심사대상 : 서울시 재배정사업 및 국·시비보조사업
- ◆ 기준금액 : 예정금액 기준(관급자재, 부가세 포함)
 - 공사 : 종합공사 5억원 이상, 전문공사(조경,전기,통신,설비) 3억원 이상
 - 용역 : 기술 2억원 이상, 일반(학술) 1억원 이상
 - 물품제조구매 : 2천만원 이상
- ◆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 시행
 - 대상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 공사
- ◆ 「사전계약심사」 시행
 - 대상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자치구는 시비 재배정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한함)
 - 신청 시기
 - 토목·건축·조경공사 : 설계공정률 50% 전후
 - 기계·전기·정보통신공사 : 설계공정률 80% 전후
- ♣ 관련근거
 - 서울시 계약심사과-4841(2012.3.23)호
 - 서울시 계약심사과-19769(2013.12.30.)호
 -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401(2014.11.6)호
 - ※ 「조달발주 대상사업」 및 「기술용역타당성 심의」를 받은 기술용역은 제외



서울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발주심의 대상 사업

☞ 문의 및 해당부서 : 서울시(기술심사담당관) ☎ 02-2133-8572~4

- ◆ 심사대상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용역비 1천만원이상 기술용역
 - 용역발주 심의 : 용역비 2억원이상(전기·기계·조경은 1억원 이상) 설계용역
 - ※ 건당 용역비 2억원이상 설계용역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와 용역발주 심의 병행
 - ※ 용역비 2억원미만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만 시행
- ◆ 요청시기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전
 - 용역발주 심의 : 예산편성 후 용역발주 전
 - 2억원 이상 병행 심의 사업 : 예산편성 후 용역발주 전
 - ※ 심사 소요기간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사 요청
- ◆ 대상용역 : 기술용역 전체
 - 건설기술용역(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설비 등)
 - 기타 도시계획, 교통, 신호통신, 소방 등 기술용역
 - 자치구 사업은 전액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함
(자치구 용역사업은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매뉴얼” 대가기준을 준용)
- ◆ 심사제외 사업
 - 학술용역, 일반용역, 기타용역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의(정보화기획단 주관)를 받은 사업
 - 예산편성 전 심의를 받은 사업
- ♣ 관련근거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6131(2009.4.10)호



보도포장 교육 인증제 시행 주요 내용

- ◆ 목 적 :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 이수자만이 서울시 보도공사에 참여하게 함으로 보도 시공품질 제고
- ◆ 대상사업 : 서울시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보도공사
- ◆ 대상자
 - 서울시 보도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품질관리자 1인 및 포장기능공 전원
 - 품질관리자가 없는 현장은 현장 참여기술자 중 1인
 - 단순 운반 등 보통인부 제외
- ◆ 시행시기
 - 2011.1.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대상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공사 착공 이전에 교육 이수
- ◆ 조치사항(발주기관)
 - 입찰공고시 현장설명서에 인증제 시행계획 명기
 - 공사 시방서에 공사 착공시 교육이수 계획서 또는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토록 명기
- ◆ 교육과정
 - 과 정 명 : 기능공 과정, 관리자 과정
 - 교육기간 : 2박3일 21시간(합숙형 교육)
 - 교육기관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충북 음성군 소재, ☎043-879-2411)



하수도공사 교육 인증제 시행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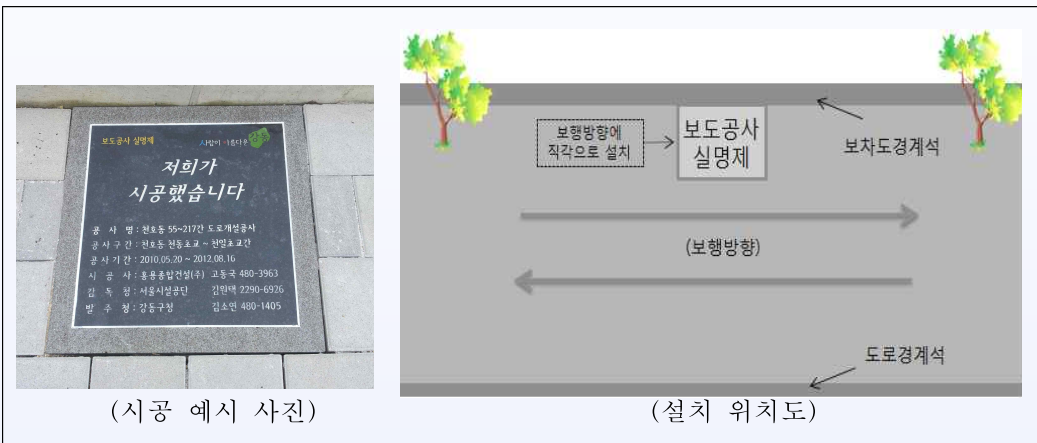
- ◆ 목 적 : 하수도공사 시공 전문기술 교육과정 이수자만이 서울시 하수도공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하수도공사 전문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하수도공사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
- ◆ 대상사업 : 서울시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하수관거 공사
- ◆ 대상자
 -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각1인 및 하수관거 부설 기능공(배관공) 전원
 - 품질관리자가 없는 현장은 현장 참여기술자 중 1인
- ◆ 시행시기
 - 2011.1.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대상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공사 착공 이전에 교육 이수
- ◆ 조치사항(발주기관)
 - 입찰공고시 현장설명서에 인증제 시행계획 명기
 - 공사 시방서에 공사 착공시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토록 명기
- ◆ 교육과정
 - 과 정 명 : 시민친화형 하수도공사 혁신과정
 - 교육기간 : 2일 16시간(비합숙 교육)
 - 교육기관 : 한국 상하수도 협회(마포구 아현동 711-2, ☎3156-7811)



걷기편한 행복거리만들기 (보도블록 10계명)

◆ 도로관리과-7908(시장방침 제134호, 2012.5.4)호 『보도(歩道)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관련

- | | | |
|-----------|---|--|
| 1 | 보도공사 실명제
아빠가 공사한거야? | 보도블록 현장에 시공자, 감리자, 감독관을 기재하겠습니다. |
| 2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한안판 길러도 영업제한 등 강력 제재 | 보도블록 전면 재시공 사유 1회 발생 시 서울시 공사입찰을 제한하겠습니다. |
| 3 | 보행자를 안전하게!
임시보행로 확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 보도블록 공사중 안전관리 강화로 보행자 안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 4 | 보도공사 Closing 11
11월 넘기면 못 한다 | 긴급공사를 제외한 보도공사는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
| 5 | 보도 파손자 원상복구
파손한 사람이 부담한다 | 보도블록 파손시 시인 행세 대신, 파손자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
| 6 |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하나에서 열까지 시민이 살핀다 |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행 불편사항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7 | 이렇게 신고하세요
보도블록도 바로바로 A/S 접수 | 파손된 보도를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여, 조속히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 8 | 보도를 보행자품으로
보도상 주정차·착차를 단속, 오토바이통행금지 | 계도 및 단속으로 보행장애물을 제거하여 보행자 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
| 9 | 보도블록 은행(bank) 운영
깨진 곳은 바로 찾아 메달대 | 보도블록 공사시 밀집량을 비축하여 파손 시 쉽게 교체하겠습니다. |
| 10 | 함께 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과 함께 |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보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시공 예시 사진)

(설치 위치도)

◆ 도로포장 수준 향상을 위한 “아스팔트 10계명” 수립

◆ 도로관리과-14861(행정2부시장 방침 제300호, 2013.09.27.)호 관련

() 도로포장 실천 10계명



- 1 [포트홀 제로]** 눈에 띄게 확 줄이겠습니다.
도로소파 발견 시 24시간 내 보수하겠습니다.
- 2 [울퉁불퉁 도로 짝]** 커피가 쏟아지지 않는 편안한 도로
자안에서도 불편함 없이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덜컹거리고 울퉁불퉁한 도로 및 맨홀 주변 짝 펴서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 3 [초일류 명품도로]** 첨단기술로 시공, 관리
첨단기술로 시공하고, 유지 관리하여 도로포장 품질수준이 세계 초일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4 [한 번의 부실시공도 영업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자도포장 재시공 사유 발생 시 서울시 공사입찰 제한하여 부실한 도로포장공사 관행의 뿌리를 뽑아내겠습니다.
- 5 [도로포장공사 실명제]** 한 번 하는 공사 제대로
강화된 기준과 책임시공체계 구축으로 제대로 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6 [단속 강화]** 도로파손 행위 엄중 단속
겨울철과 장마철에는 함부로 도로를 파내는 공사나 과적한 차량의 도로통행은 엄중 하게 단속 하겠습니다.
- 7 [운전자를 안전하게]**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와 사전홍보로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8 [도로 모니터링단 운영]** 언제 어디서든 불편사항 신고
모든 시민이 도로 감시자가 되어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편사항을 세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9 [달인이 되겠습니다]** 세계 속 자랑스런 도로포장 장인
서울시 도로포장공사 담당자는 세계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 10 [함께 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과 함께
자치구,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품질관리에서 제도까지 고쳐가겠습니다.



서울형 도로포장 전문 기술교육 시행 주요 내용

- ◆ **목 적** : 도로포장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및 현장실습을 통해 포장공사 관계자의 시공기술 향상 도모
- ◆ **교육시기** : 매년 2월~4월, 7월, 11월~12월
- ◆ **교육기관**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경기도 화성시 통탄면)
 - 교육과정 : 관리자 과정(3일)
 - 교육대상 : 공무원(시, 도로사업소,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 교육과목 : 서울시 도로관리정책 방향, 아스팔트포장유지관리, 포장시공, 굴착복구 실습 등
 - 건설기술연구원(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교육과정
 - 포장시공(감리)전문화 과정(2주) : 시공사, 감리원, 아스콘플랜트 회사(품질관리 담당)
 - 포장기능원 과정(2일) : 시공장비 운전기능원
 - 교육과목 : 서울시 도로관리정책 방향, 아스팔트포장유지관리, 포장시공, 아스팔트 포장 장비 이해
- ◆ **시행시기**
 - 2014.01.01.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대상사업에 참여하는 품질관리 기술자는 공사착공 이전에 교육 이수
- ◆ **조치사항(발주기관)**
 - 입찰공고시 현장설명서에 인증제 시행계획 명기
 - 교육이수 계획서 또는 교육수료증 사본을 착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보행안전도우미 인증제 시행 주요 내용

- ◆ **목 적** : 보도공사장 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 ◆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현황**
 - 배치 대상 : 연장 10m 이상의 임시보행로 확보가 필요한 보도공사장
 - 배치 기준

임시보행로 연장	배치인원	근무위치	비고
10m이상~30m미만	1인/일	임시보행로 양측을 오가며 보행자 안내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
30m이상	2인/일	임시보행로 양측 출입구에서 보행자 안내	

 -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 임시보행로 안내, 안전펜스 및 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 점검, 보도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 ※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위 임무외 타 활동(공사시공, 교통정리 등) 금지
- ◆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인증제 운영**
 - 시행 시기 : 2014.07.01. 이후
 - 교육 주관 : 한국건설안전도우미 협동조합
 - 교육 내용(1일 8시간)
 - 이론교육(4시간) : 보행안전도우미 역할, 예절교육 등
 - 실습교육(4시간) : 유형별 통행인 안내법, 민원인 대처방법 등
- ◆ **조치사항**
 - 공사 계약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이수자 배치 서약서 제출
 - 현장 착공 시 보행안전도우미 명단 제출 의무화



도로포장공사 실명제 추진

☎ 문의 및 해당부서 : 도로관리과 ☎ 02-2133-8183

- ◆ **적용대상** : 시도 및 구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도로공사
 - 포장면적 30a이상인 포장도로 정비공사
 - 차로구분 없이 연장 500m이상의 포장도로 정비공사
 - 연장 100m이상의 모든 굴착복구공사
 - 포장공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포장면적 10a이상인 사업
- ◆ **실명제 표지판 설치방법**
 - 공사구간 시종점 10m이내 가로등에 1개씩 설치
 - 대규모 정비사업 등 포장면적이 넓은 경우 및 포장구간 선형 변경이 생기는 경우 구획단위로 추가설치
- ◆ **실명제 표지판 내용**
 - 공사명, 공사기간, 정비구간, 공사구분, 시공사정보, 아스콘정보, 발주처 등
- ◆ **적용시기** : 2014년부터 발주하는 도로포장(굴착복구)공사에 적용
- ♣ **관련근거** : 서울시 도로관리과-18566호(2013.12.5.)
- ※ 설치예시



가로등 설치(안)

공사명/ 공사구분	○○포장공사 / 노후(긴급)포장공사, 굴착복구공사		
공사 구간	○○삼거리 ~ △△사거리 시점 → (1~3차로 포장)		
공사 기간	2013.03.15. ~ 2013.10.20		
시 공 회 사	주 일 류 건 설	대 표 홍 일 류	02-○○○-○○○○
	현 장 책 임 자	소 장 김 책 임	02-△△△-△△△△
시 행 기 관	▲▲구청	감 독 이 서 울	02-☆☆☆-☆☆☆☆
제 품 생 산	■■아스콘(주)	포 장 종 류	◎◎아스팔트

실명제 표지판(안)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

☎ 문의 및 해당부서 : 발주부서

- ◆ **입력대상 공사**
 - 단기 공사 : 도금액 5억 미만 공사기간 1년 미만
 - 장기(일반)공사 : 단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
 - ※ 단기 공사는 공사개요만 입력
- ◆ **이용방법**
 - 발주청 업무담당자 : 사용자등록 신청 후 사업등록
 - 시공사(현장대리인) : 사용자등록 신청 후 사업개요, 공정산정기초 입력 및 공정진척보고
 - 감리사(책임감리원) : 시공사가 입력한 공정보고 내용 확인 후 승인
 - ※ <http://pmis.eseoul.go.kr> , 문의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정보관리과 ☎3708-2384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도입배경**

- 건설업자의 경영악화, 보도 등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

◆ **보증대상** : 원·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임대계약

- 건설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의무(면제대상 공사 제외)

※ 면제대상

- ① 발주자, 원·하도급자, 장비업자가 장비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한 경우
- ② 2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인 경우

- 보증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6개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보증금액** : 지급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체불이 발생한 금액

발생한 금액으로서 최대 4개월분 보장

- 대여기간이 4월 이하 : 보증금액=계약금액-선급금
- 대여기간이 4월 초과 : 보증금액=((계약금액-선급금)/계약 공사월수)×4월

◆ **보증기간** : 건설기계대여일부터 계약 이행기일까지 보증

◆ **보증수수료** : 보증기간별 산정방식과 실정에 따라 수수료 산정

- 기준요율

- 건설공제조합 연1.4%, 전문건설공제조합 건당 2.0%
- 설비공제조합 건당 2.72%(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 차등)

◆ **조치사항**

-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 입력 및 확인 철저
 - 하도급,지제,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확인 철저(계약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
- 발주부서에서는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공사원가에 반영, 원·하도급사의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서면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 콜센터(☎1899-5670)” 로 문의